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402
----------	-------

발의연월일 : 2023. 9. 12.

발 의 자 : 장동혁 · 최영희 · 조수진
허은아 · 윤창현 · 성일중
윤상현 · 홍문표 · 류성걸
이명수 · 권성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경쟁 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비다수인 대상 채용)을 통해서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의 경우 공고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자녀가 공고 없이 진행된 비다수인 대상 채용에서 면접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채용 비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 제도가 모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비다수인 대상 채용되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도록 제외함으로써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단서).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신규채용) ① (생략)	제28조(신규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u>제7호(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u> ----- ----- ----- -----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